

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

1. 관련

- 가. 요양병원 방역조치 개편방안 안내(의료기관정책과-3597호, 2022.6.17.)
- 나.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-27016호, 2022.6.17.)
- 다.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6912호, 2022.6.17.)

2. 요양병원,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, 신규 입원환자 및 입소자의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, 관련 기관에 안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적용대상

- (요양기관) 요양병원 · 정신의료기관 ·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
- (사회복지시설) 노인의료복지시설 · 장애인거주시설 · 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

○ 주요내용

- (현행) 입원 시 2회 PCR 검사(?입원 시 ?격리 3일차) → (변경) **입원 시 1회 검사***
- * 검사 시기, 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21호 참고)

○ 적용기간

- 2022.6.27.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. 끝.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의료기관정책과장

주무관

송서현

보건사무관

조영대

보험급여과장

전결 06/24

정성훈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3243

2022.06.24.

접수

우 30113

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shsong98@korea.kr

전화 044-202-2737

전송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

/ 공개
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